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2.
21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3년 2월 9일
- 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1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2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

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(안 제11조): 필수노동자 → 필수업무 종사자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맞춤법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 -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(시행 2022.11.17.)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1조에서 현행 조례상의 “필수노동자”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하고 있는 “필수업무 종사자”라는 용어로 변경하여,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하였음.
- 검토 결과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추어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
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: 2023년 2월 일
발의자: 이규선, 000(0인)

1. 제안이유

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(안 제11조)
-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맞춤법 정비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
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2. 7.~2023. 2. 12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필수노동자”를 각각 “필수업무 종사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있으며”를 “있으며,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